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215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2153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가단10505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주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주환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씨

담당변호사 이하얀

변론 종결 2024. 3. 6.

판결 선고 2024. 4. 3.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가단10505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C과 피고 사이에 60,000,000원에 관하여 2017. 10. 17. 체결된 증여계약 및 315,000,000원에 관하여 2017. 12. 22. 체결된 증여계약은 98,784,93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784,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강조하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1. 1. C에게 50,000,000원이 아니라 25,000,000원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C은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7. 12. 22. 소극재산(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리금 27,909,589원)보다 적극재산(경기 가평균 M 임야 42,744㎡ 공시지가 기준 31,801,536원)이 더 많았으므로 무자력이 아니었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증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11. 1. C과 차용금액을 5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에는 C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고 C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점, ② 위 차용증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분명하고도 수증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위 차용증 기재 내용대로 차용금이 5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는 '원고가 2016. 11. 2. C에게 25,000,000원만을 송금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위 차용증은 C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각종 장비를 임차한 대가 25,000,000원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C이 공사업을 영위하였던 점에 비추어 오히려 원고의 위 주장을 수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11. 1. C에게 50,000,000원이 아닌 25,000,000원만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C은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7. 12. 22. 무자력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황중연

판사김경년

판사이종욱